

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화장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,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(이하 이 조에서 “과징금납부의무자”라 한다)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
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
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

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

1.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
2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4조제1호 중 “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”을 “화장품책임판매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법 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6조”로, “수리”를 “수리, 등록 취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”으로 하며, 같

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법 제14조에 따른 실증 요청, 제출기간 연장 및 표시·광고 행위
의 중지 명령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2조의2(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(이하 이 조에서 “과징금납부의무자”라 한다)가 납부해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1.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</u> <u>2.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</u> <u>3.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</u>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,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,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.

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

	<u>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.</u> <u>1.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</u> <u>2. 담보의 변경,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</u> <u>3. 강제집행, 경매의 개시, 파산선고, 법인의 해산,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4.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
<u>제12조의2 (생략)</u> 제14조(권한의 위임)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	<u>제12조의3 (현행 제12조의2와 같음)</u> 제14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

1. 법 제3조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<u>화장품제조책임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</u> 1의2. ~ 1의4. (생략) 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폐업, 휴업 등 신고의 <u>수리</u> <u><신설></u> 3. ~ 11. (생략)	1. ----- ----- <u>화장품책임판매업</u>----- ----- 1의2. ~ 1의4. (현행과 같음) 2. 법 제6조----- ----- <u>수리, 등록 취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</u> 2의2. 법 제14조에 따른 실증 요청, 제출기간 연장 및 표시·<u>광고 행위의 중지 명령</u> 3. ~ 11. (현행과 같음)
---	---